

통합건강증진사업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,65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지역주민
- 사업내용: 1. 생애주기별 건강관리
-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사업, 아동청소년건강관리사업, 성인건강관리사업, 노인건강관리사업
2. 사업분야별 건강관리
- 음주폐해예방(절주), 신체활동, 영양, 비만예방관리, 구강보건,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, 한의약건강증진, 아토피천식 예방관리, 여성어린이특화, 지역사회중심재활, 금연, 방문건강관리, 치매관리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 관내 지역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및 각 사업별 법령에 의거 추진
- 추진계획: 1~2월 사업계획서 작성
2월~12월 지역주민 중 건강고위험군 등록 및 건강관리,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, 교육, 홍보 캠페인 등 추진
7월/익년도 1월 상하반기 사업 평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52,084	307,044	45,040	14.67%
예산총계	352,084			
기금보조금	176,042			
광역보조금	88,021			
자체자원	88,021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52,084	307,044	45,040	14.67%
101 인건비	63,600	32,400	31,200	96.30%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63,600	32,400	31,200	96.30%
201 일반운영비	81,484	73,332	8,152	11.12%
01 사무관리비	79,484	71,332	8,152	11.43%
02 공공운영비	2,000	2,000	0	0.00%
202 여비	3,000	3,000	0	0.00%
01 국내여비	3,000	3,000	0	0.00%
203 업무추진비	5,000	5,000	0	0.00%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5,000	5,000	0	0.00%
301 일반보전금	25,000	20,000	5,000	25.00%
14 기타보상금	25,000	20,000	5,000	25.00%
307 민간이전	174,000	173,312	688	0.40%
01 의료 및 회복비	174,000	173,312	688	0.40%

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운영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,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전반적 이해, 활용방안 학습 추진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2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기관별 1명
1인당 교육비 2,94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- 사업내용 : 정부 정책방향,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전반적 이해, 활용방안 학습 추진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50%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만성질환예방관리 관련 지침
- 추진계획 : 2021년 4월~11월(중앙 및 권역교육 운영)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,940	2,940	0	0.00%
예산총계	2,940			
기금보조금	1,470			
광역보조금	1,47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,940	2,940	0	0.00%
201 일반운영비	2,940	2,940	0	0.00%
01 사무관리비	2,940	2,940	0	0.00%

모바일 헬스케어사업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ICT를 활용한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구민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38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지역주민 200여명
- 사업내용: 1. 사전·중간·최종 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 평가
-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, 건강행태에 따른 목표 설정 및 운동·영양·건강 상담
2. 모바일 앱(APP)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(24주) 제공
- 디바이스 연동을 통한 운동실천 및 건강 모니터링, 건강정보 콘텐츠 발송
- 우수 참여자(상위 랭킹) 인센티브 제공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 관내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보건복지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0,614	76,400	4,214	5.52%
예산총계	80,614			
기금보조금	40,307			
광역보조금	20,154			
자체재원	20,153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0,614	76,400	4,214	5.52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101 인건비	32,880	30,480	2,400	7.87%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32,880	30,480	2,400	7.87%
201 일반운영비	34,184	29,920	4,264	14.25%
01 사무관리비	34,184	29,920	4,264	14.25%
301 일반보전금	4,500	6,000	△1,500	△25.00%
14 기타보상금	4,500	6,000	△1,500	△25.00%
307 민간이전	9,050	10,000	△950	△9.50%
01 의료 및 회복비	9,050	10,000	△950	△9.50%

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94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지역주민
- 사업내용: 1. 지역사회중심 금연환경 조성
 - 법령이행 실태점검, 지자체 금연 조례 제정
 - 지역사회중심 포괄적 금연 사업 추진
 - 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2. 시행주체: 사하구
3.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하신중앙로 185 (신평동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, 제9조
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
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
- 추진계획: 금연환경 조성 및 조례 지정
법령이행 실태점검
금연클리닉 운영 확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12,516	198,287	14,229	7.18%
예산총계	212,516			
기금보조금	106,258			
광역보조금	53,129			
자체재원	53,129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12,516	198,287	14,229	7.18%
201 일반운영비	71,916	75,987	△4,071	△5.36%
01 사무관리비	70,400	71,247	△847	△1.19%
02 공공운영비	1,516	1,740	△224	△12.87%
202 여비	500	500	0	0.00%
01 국내여비	500	500	0	0.00%
203 업무추진비	800	800	0	0.00%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800	800	0	0.00%
301 일반보전금	75,800	71,000	4,800	6.76%
14 기타보상금	75,800	71,000	4,800	6.76%
307 민간이전	40,000	40,00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40,000	40,000	0	0.00%
308 자치단체등이전	15,500		15,500	100.00%
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	15,500	0	15,500	100.00%
401 시설비및부대비	8,000	10,000	△2,000	△20.00%
01 시설비	8,000	10,000	△2,000	△20.00%

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하고 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, 지역 중심의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를 표준화하여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35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기금 50%, 구비 50%
- 사업내용: 1. 건강조사
- 사하구민의 건강행태, 만성질환 유병과 삶의 질 등 면접조사 및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혈압) 수행
2. 건강통계
- 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 생산 및 통계집 발간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기금 50%, 구비 50%
- 사업위치: 위탁기관: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- 추진경위: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건강통계 부재
- 추진계획: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단위 건강통계 산출 및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9,550	69,542	8	0.01%
예산총계	69,550			
기금보조금	34,775			
자체재원	34,775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9,550	69,542	8	0.01%
201 일반운영비	200	200	0	0.00%
01 사무관리비	200	200	0	0.00%
203 업무추진비	300	300	0	0.00%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300	300	0	0.00%
307 민간이전	69,050	69,042	8	0.01%
05 민간위탁금	69,050	69,042	8	0.01%

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보건소별 우수건강지표 발굴 및 보건소 공무원의 근거기반의 보건사업 성과분석 역량 강화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보건소 공무원 1명
- 사업내용: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이수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 50%, 시비 50%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질병관리청 「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」 운영 계획
- 추진계획: 사업기간: 2024. 6월~10월(미정)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,940	1,960	△20	△1.02%
예산총계	1,940			
기금보조금	970			
광역보조금	97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,940	1,960	△20	△1.02%
201 일반운영비	1,940	1,960	△20	△1.02%
01 사무관리비	1,940	1,960	△20	△1.02%

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증진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: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지역사회 주민 건강서비스 제공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구비100%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국민건강증진법제6조
- 추진계획: 2019.01.01.~2019.12.31.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00	700	0	0.00%
예산총계	700			
자체재원	7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00	700	0	0.00%
201 일반운영비	700	700	0	0.00%
02 공공운영비	700	700	0	0.00%

건강도시 조성 사업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보건의료취약마을에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적 건강마을 실현, 주민 주도의 건강공동체 형성을 통해 취약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사하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,10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420,000천원
- 사업내용: 1. 주민 참여 건강마을 계획 수립
2. 민관 협력 건강프로그램 운영, 상시 건강상담
3. 주민 역량강화 교육, 건강리더자 양성
4. 주민 주도적 취약주민 지역자원 연계, 문제해결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괴정2동, 괴정3동, 신평1동, 장림1동, 감천2동, 구평동, 다대1동 등 지역주민 (시비 50%, 구비 50%)
- 사업위치: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, 괴정3동, 신평1동, 장림1동, 감천2동, 구평동, 다대1동
- 시행주체: 부산광역시 사하구
- 추진근거: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4조
- 추진경위: 보건의료취약마을에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적 건강마을 실현을 위해 마을건강센터 운영
- 추진계획: 마을건강센터 활성화 및 주민조직화 확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○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20,000	448,000	△28,000	△6.25%
예산총계	420,000			
광역보조금	210,000			
자체재원	210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20,000	448,000	△28,000	△6.25%
101 인건비	135,300	97,200	38,100	39.20%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135,300	97,200	38,100	39.20%
201 일반운영비	140,700	206,800	△66,100	△31.96%
01 사무관리비	134,700	200,800	△66,100	△32.92%
02 공공운영비	5,000	5,000	0	0.00%
03 행사운영비	1,000	1,000	0	0.00%
203 업무추진비	1,200	1,200	0	0.00%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1,200	1,200	0	0.00%
301 일반보전금	121,800	121,800	0	0.00%
14 기타보상금	121,800	121,800	0	0.00%
307 민간이전	21,000	21,00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21,000	21,000	0	0.00%

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주도적 건강마을 실현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3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건강생활지원센터 777㎡ (지상 3,4층)
- 사업내용: 1. 걷기 특화사업
2. 만성질환 예방관리
3. 신체활동,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,
4. 주민 건강동아리 운영 등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공모사업 (설치비, 장비비 지원) (구비 100%)
- 사업위치: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내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지역보건법 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
- 추진경위: 2019년 공모사업
- 추진계획: 2021년 1월 개소
2024년 1~12월 사업 운영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8,800	25,000	△6,200	△24.80%
예산총계	18,800			
자체재원	18,8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8,800	25,000	△6,200	△24.8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201 일반운영비	14,800	21,000	△6,200	△29.52%
01 사무관리비	10,000	17,400	△7,400	△42.53%
02 공공운영비	4,800	3,600	1,200	33.33%
301 일반보전금	3,000	3,000	0	0.00%
14 기타보상금	3,000	3,000	0	0.00%
307 민간이전	1,000	1,00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1,000	1,000	0	0.00%

방문건강관리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,77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: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균특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지역보건법 제11조
- 추진계획: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지역담당제 운영
대상자 군 분류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94,207	185,520	8,687	4.68%
예산총계	194,207			
균특보조금	97,103			
광역보조금	48,552			
자체재원	48,552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94,207	185,520	8,687	4.68%
101 인건비	46,540	36,960	9,580	25.92%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46,540	36,960	9,580	25.92%
201 일반운영비	31,700	29,534	2,166	7.33%
01 사무관리비	30,000	24,534	5,466	22.28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2 공공운영비	1,700	5,000	△3,300	△66.00%
301 일반보전금	1,600	0	1,600	100.00%
14 기타보상금	1,600	0	1,600	100.00%
307 민간이전	114,367	119,026	△4,659	△3.91%
01 의료 및 회복비	114,367	119,026	△4,659	△3.91%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전환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3,99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: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,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시비 85%, 구비 15%
- 사업위치: 보건소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
- 추진경위: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,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
- 추진계획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점검 및 관리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○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94,179	856,154	△161,975	△18.92%
예산총계	694,179			
광역보조금	590,052			
자체재원	104,127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94,179	856,154	△161,975	△18.92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7 민간이전	694,179	856,154	△161,975	△18.92%
05 민간위탁금	694,179	856,154	△161,975	△18.92%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자체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30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: 부산시 거주 6개월 이상 소득기준 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,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시비 50% 구비 50%
- 사업위치: 사하구보건소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8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
- 추진경위: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,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
- 추진계획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점검 및 관리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0,000	96,000	△36,000	△37.50%
예산총계	60,000			
광역보조금	30,000			
자체재원	30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0,000	96,000	△36,000	△37.5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7 민간이전	60,000	96,000	△36,000	△37.50%
05 민간위탁금	60,000	96,000	△36,000	△37.50%

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7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: - 지원내용: 1인당 최고금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(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보건소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법 제3조, 제10조
- 추진계획: 고위험 임신부 임신,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
(산부인과, 소아과 의료기관, 조산원,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및 분만관련 인프라 활용)
고위험 임신부 신청서 접수 후 의료비 지원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4,000	44,320	△10,320	△23.29%
예산총계	34,000			
기금보조금	17,000			
광역보조금	8,500			
자체재원	8,5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4,000	44,320	△10,320	△23.29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7 민간이전	34,000	44,320	△10,320	△23.29%
01 의료 및 회복비	34,000	44,320	△10,320	△23.29%

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산전관리가 취약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,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구비 등
- 사업내용: - 지원내용: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, 출산 관련 의료비 바우처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구비 등
- 사업위치: 사회보장정보원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법 제3조, 사회복지서비스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, 제11조 및 제28조,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, 제8조의2, 국민행복카드 통합관리 운영관리 사업 계약 제2조 및 제3조
- 추진계획: 청소년산모 임신,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
(산부인과, 소아과 의료기관, 조산원,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및 분만관련 인프라 활용)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,600	3,600	0	0.00%
예산총계	3,600			
기금보조금	1,800			
광역보조금	900			
자체재원	9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,600	3,600	0	0.00%
307 민간이전	3,600	3,600	0	0.00%
05 민간위탁금	3,600	3,600	0	0.00%

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모자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5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: - 모자보건사업 지원(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, 건강교실 운영 등)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보건소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법 제 3조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000	10,000	0	0.00%
예산 총계	10,000			
기금보조금	5,000			
광역보조금	2,500			
자체재원	2,5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000	10,000	0	0.00%
101 인건비	10,000	10,000	0	0.00%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10,000	10,000	0	0.00%

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, 예방접종, 검진(검사) 등 의무기록 유지, 양육에 대한 필수,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구비 등
- 사업내용: 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배포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구비 등
- 사업위치: 보건소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법 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및 동법 제9조(모자보건수첩의 발급)
- 추진경위: 민간 병의원 및 분유회사 등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정보의 객관성 확보 부족 및 건강기록 단절로 임산부 및 영유아 체계적인 건강관리 미흡
- 추진계획: 산전 진찰 보험급여 및 6세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, 예방접종 사업 등과 연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활용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도모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,440	2,440	0	0.00%
예산총계	2,440			
기금보조금	1,220			
광역보조금	610			
자체재원	61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,440	2,440	0	0.00%
307 민간이전	2,440	2,440	0	0.00%
05 민간위탁금	2,440	2,440	0	0.00%

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통한 모아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6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: - 사업내용: 각종 자료 제작 및 모자보건사업 관련 운영용품 등 구입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구비 100%
- 사업위치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법 제3조
- 추진경위: 모자보건 관련 사업 추진
- 추진계획: 모자보건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서식 제작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물품 등 구입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243	7,585	2,658	35.04%
예산총계	10,243			
자체재원	10,243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243	7,585	2,658	35.04%
101 인건비	5,503	5,365	138	2.57%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5,503	5,365	138	2.57%
201 일반운영비	2,240	2,220	20	0.9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1 사무관리비	1,000	970	30	3.09%
02 공공운영비	1,240	1,250	△10	△0.80%
405 자산취득비	2,500		2,500	100.00%
01 자산및물품취득비	2,500	0	2,500	100.00%

선천시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선천시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·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2,000천원
- 사업내용: - 지원대상: (검사비)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또는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 중 외래 검사 등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시, (보청기)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또는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의 3세 미만(36개월 미만) 난청 환자
- 지원내용: 선천시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- 추진경위: 07~08년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09년부터 전국 단위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실시
09년부터 저소득층(최저생계비 120% 이하) 대상으로 지원하다가 점차 지원범위 확대 시행
18년 10월 난청선별검사 2종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기준 변경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19년부터 보청기 지원 사업 추가 시행
- 추진계획: 선천시 난청조기진단사업 홍보
난청확진 환자 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수행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,000	2,000	0	0.00%
예산총계	2,000			
기금보조금	1,000			
광역보조금	500			

자체재원	500			
------	-----	--	--	--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,000	2,000	0	0.00%
307 민간이전	2,000	2,00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2,000	2,000	0	0.00%
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·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19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36,152천원
- 사업내용 : - 지원대상 : (검사비)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또는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 중 외래 검사 등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시, (환아관리)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아
- 지원내용 :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질환 특성에 따른 환아 정밀검사비, 의료비,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- 추진경위 : 91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검사비 지원, 97년부터 당해 연도에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대사이상검사 확대 실시, 2018년 10월부터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기준 변경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2019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대상이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
- 추진계획 :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 홍보
대사이상 유소견 대상자 관리 및 사업 안내
확진 시 보건소 환아 등록 후 19세 미만까지 관리 및 지원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6,152	36,152	0	0.00%
예산총계	36,152			
기금보조금	18,076			

광역보조금	9,038			
자체재원	9,038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6,152	36,152	0	0.00%
307 민간이전	36,152	36,152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36,152	36,152	0	0.00%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41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80,480천원
- 사업내용 : 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또는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
- 지원내용 : 최고 1인당 1,5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(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- 추진경위 : 99년 모자보건법 개정, 00년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
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의료비 차이가 극심함을 감안, 05년부터 체중별 의료비지원 등 실시
16년 10월 신생아 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 항목 급여화 추진 및 18년 1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조정
- 추진계획 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 관리 및 지원사업 안내
미숙아 등 출생신고 접수받고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
관리방안계획 수립 및 의료비 지원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0,480	80,480	0	0.00%
예산총계	80,480			
기금보조금	40,240			
광역보조금	20,120			

자체재원	20,120			
------	--------	--	--	--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0,480	80,480	0	0.00%
307 민간이전	80,480	80,48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80,480	80,480	0	0.00%

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날기 좋은 환경 조성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,23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445,000천원
- 사업내용: - 지원대상: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수급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(2명 이상) 출산 가구
- 지원내용: 기저귀 구매비용 월 80,000원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00,000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
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
- 추진경위: 대선 공약으로 선정(12.12월),
15.10.30. 사업 시행,
16년 지원단가 인상(기저귀 32천원→64천원, 조제분유 43천원→86천원)
17년 기저귀 지원 사업기간(생후0~24개월) 확대 및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부자 및 조손가정 대상 조제분유 지원 추가
18년 조제분유 지원대상 추가(산모 의식불명, 영아 입양가정 등)
19년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
20년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 확대 지원
22년 지원단가 인상(기저귀 64천원→70천원, 조제분유 86천원→90천원)
23년 지원단가 인상(기저귀 70천원→80천원, 조제분유 90천원→100천원)
- 추진계획: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
관리계획 수립 후 자격확인 등 수급자 관리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○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45,000	445,000	0	0.00%
예산 총계	445,000			

국고보조금	222,500			
광역보조금	111,250			
자체재원	111,25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45,000	445,000	0	0.00%
307 민간이전	445,000	445,000	0	0.00%
05 민간위탁금	445,000	445,000	0	0.00%

난임시술비 지원(전환사업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,65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국가 정책사업
- 사업내용: 체외수정,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시비 7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보건소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모자보건법 제3조
- 추진경위: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적 책임 요구 증대
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 필요
- 추진계획: 지원신청 접수 상담 및 지원대상자 선정, 의료비 지급, 홍보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34,648	334,648	0	0.00%
예산총계	334,648			
광역보조금	250,986			
자체재원	83,662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34,648	334,648	0	0.0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7 민간이전	334,648	334,648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334,648	334,648	0	0.00%

난임지원바우처사업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- 난임시술 희망하는 자에게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난임 주사투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리성과 선택권 제고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35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지방계획 정책사업
- 사업내용: 1. 난임 시술비
- 지원대상: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자
- 지원내용: 1회당 최대 110만원 이내, 가임기 혜택 17회
2. 난임 주사제비용(행위료)
- 지원대상: 난임시술대상자 중 프로게스테론 주사가 필요한 자
- 지원내용: 1회 1만원씩, 최대 8주 / 56만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시비 100%
- 사업위치: 사하구보건소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, 모자보건법 제11조, 市 민선7기 공약사항
- 추진경위: -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 대응
- 녹록치 않는 현실에 대한 인식
- 난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매년 증가추세등으로 난임지원 시책사업 실현 필요
- 추진계획: 지원신청 접수 상담 및 지원대상자 선정, 의료비 지급, 홍보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0,000	70,000	0	0.00%
예산총계	70,000			
광역보조금	70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0,000	70,000	0	0.00%
307 민간이전	70,000	70,00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70,000	70,000	0	0.00%

한방난임지원사업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 유도 및 출산율 향상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5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지방계획 정책사업
- 사업내용: 난임 판정을 받은 가정에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실시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시비 100%
- 사업위치: 부산시한의사회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경위: 여성친화적인 한방전문 난임 시술로 저출산 극복 국가정책 실현
확립화된 양의학 난임시술 대안 마련 근거 중심의 사업추진
- 추진계획: 한방난임사업 계획 수립 (한의사회)
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
사업 참가 한의원 선정 및 교육
사업 성과대회 개최 등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500	10,500	0	0.00%
예산총계	10,500			
광역보조금	10,5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500	10,500	0	0.00%
307 민간이전	10,500	10,500	0	0.0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1 의료 및 회복비	10,500	10,500	0	0.00%

국가암관리사업(암검진)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를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것을 목적으로 함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1,50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962,948천원
- 사업내용 : 6대암검진 :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금50%, 시비50%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11조, 제6조
- 추진경위 : 2016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을 전체 20세로 확대 실시
2019년 8월부터 폐암검진 시행
2020년 검진 2021년 6월까지 연장시행
- 추진계획 :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58,000	350,880	507,120	144.53%
예산총계	858,000			
기금보조금	429,000			
광역보조금	429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58,000	350,880	507,120	144.53%
307 민간이전	858,000	350,880	507,120	144.53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5 민간위탁금	858,000	350,880	507,120	144.53%

국가암관리사업(암홍보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,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0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18,500천원
- 사업내용: 국가암검진(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) 수검 홍보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기금50%, 시비50%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암관리법 제11조, 제6조
- 추진경위: 2016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을 전체 20세로 확대 실시
2019년 8월부터 폐암검진 시행
2020년 검진 2021년 6월까지 연장시행
- 추진계획: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2,000	10,000	12,000	120.00%
예산총계	22,000			
기금보조금	11,000			
광역보조금	11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2,000	10,000	12,000	120.00%
101 인건비	17,000	8,000	9,000	112.5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17,000	8,000	9,000	112.50%
201 일반운영비	5,000	2,000	3,000	150.00%
01 사무관리비	5,000	2,000	3,000	150.00%

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(암환자의료비)(전환사업)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증대
- 사업기간 : 1900년01월01일 ~ 2030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4,200,000 천원 (전년까지 기 투자액: 1,200,000 천원)
- 사업규모 : 649,544천원
- 사업내용 : 1.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
 - 소아암(~만18세)
 - 성인(의료수급권자: 모든암종 / 건강보험가입자: 6대암)
 - * 건강보험가입자: '21.6.31.까지 해당암에 대한 국가암검진 기록보유, 지원받고자하는 해의 1월 건강보험료 기 준충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75%, 구비25%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암관리법 제2조, 제13조, 제9조, 제10조
- 추진계획 :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증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○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49,544	649,544	0	0.00%
예산총계	649,544			
광역보조금	487,158			
자체재원	162,386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49,544	649,544	0	0.00%
307 민간이전	649,544	649,544	0	0.0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1 의료 및 회복비	649,544	649,544	0	0.00%

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(재가암환자관리)(전환사업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,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,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 감소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6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: 보건소 등록된 재가암환자에게 식사보조식품, 영양제 등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시비 75% 구비 25%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암관리법 제3조, 암관리법 제12조
- 추진계획: 재가암환자 등록관리,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, 영양제 등 물품 제공,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연계 등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000	10,000	0	0.00%
예산총계	10,000			
광역보조금	7,500			
자체재원	2,5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000	10,000	0	0.00%
307 민간이전	10,000	10,00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10,000	10,000	0	0.00%

암검진 바우처 지원사업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의 위, 대장, 유방암 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31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62,500천원(시비100%) : 암검진비급여비용 검진비지원 61,500천원, 홍보비 1,000천원
- 사업내용 :
 - 위 암 : 위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(비급여) 50천원 지원
 - 대장암 : 1차검사(분변잠혈검사) 후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수면비용(비급여) 50천원 지원
 - 유방암 : 유방촬영술후 유소견자의 유방초음파 비용 80천원 지원
 - ▷ 『2020년 국가 암 검진 사업안내』에 따라 유방암 검진 판정기준이 “유방암의심”, “판정유보” 일 경우에 한해 유방초음파 비용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100%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의료급여법 제5조(보장기관), 암관리법 제3조(국가 등 의무)
- 추진계획 :
 - 직접 대상자와 유선통화로 사업안내
 -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수검독려 문자전송 및 지역언론 활용을 통한홍보 시행
 - 현수막 및 전광판 활용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5,000	48,800	6,200	12.70%
예 산 총 계	55,000			
광역보조금	55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5,000	48,800	6,200	12.70%
201 일반운영비	1,000	2,000	△1,000	△50.0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1 사무관리비	1,000	2,000	△1,000	△50.00%
307 민간이전	54,000	46,800	7,200	15.38%
01 의료 및 회복비	54,000	46,800	7,200	15.38%

보건소 암 관리사업 지원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암검진유도 및 암치료로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7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14,750천원
- 사업내용 : 암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안내 및 유소견자 관리를 위해 암관리사업 전산요원 사역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50%, 구비50%
- 사업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27번길2 (사하구 보건소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보건위생과-6720(07.3.6)
- 추진경위 : 암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안내 및 유소견자 관리를 위해 암관리사업 전산요원 사역
- 추진계획 : 암검진유도 및 암치료로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 도모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4,750	14,750	0	0.00%
예산총계	14,750			
광역보조금	7,375			
자체재원	7,375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4,750	14,750	0	0.00%
101 인건비	14,750	14,750	0	0.0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14,750	14,750	0	0.00%

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고혈압,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33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72,000천원
- 사업내용: -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
- 심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3개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1,2차 검진실시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기금80%, 시비20%
- 사업위치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,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- 추진경위: 검진을 향상을 위한 수검독려 및 홍보 시행
- 추진계획: -직접 대상자와 유선통화로 수검안내
-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수검독려 문자전송 및 지역언론 활용을 통한 홍보 시행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3,239	67,500	15,739	23.32%
예산총계	83,239			
기금보조금	66,591			
광역보조금	16,648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3,239	67,500	15,739	23.32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7 민간이전	83,239	67,500	15,739	23.32%
05 민간위탁금	83,239	67,500	15,739	23.32%

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상황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4,422천원
- 사업내용: 검진 시기별 영유아 대상 문진 및 진찰, 신체계측, 발달평가 및 상담, 건강교육 및 상담, 구강검진 실시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80%, 시비20%
- 사업위치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(건강검진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
의료급여법 제14조(건강검진)
- 추진경위: 07년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계획 발표 후 건강보험적용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
08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
10년 42~48개월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추가
12년 66~71개월 건강검진 추가
21년 14일~35일 건강검진 추가
- 추진계획: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수행
영유아 건강검진 사업홍보 및 대상자 수검 독려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,387	4,375	3,012	68.85%
예산총계	7,387			
기금보조금	5,910			
광역보조금	1,477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,387	4,375	3,012	68.85%
307 민간이전	7,387	4,375	3,012	68.85%
05 민간위탁금	7,387	4,375	3,012	68.85%
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1.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2.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,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형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5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10,000천원
- 사업내용: -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상 '심화평가권고'에 해당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80%이하 가구
- 1인당 최고 40만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80%, 시비20%
- 사업위치: 사하구보건소 및 부산 소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기관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(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)
- 추진경위: 19년부터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의 '심화평가권고'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%이하인 자 대상으로 지원대상 확대
- 추진계획: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자료(영유아 정밀진단비지원 대상자명단) 확인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
지원 대상자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등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000	10,000	0	0.00%
예산총계	10,000			
기금보조금	8,000			
광역보조금	2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,000	10,000	0	0.00%
307 민간이전	10,000	10,00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10,000	10,000	0	0.00%

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사업홍보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1,250 천원
- 사업내용: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물(품) 제작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80%, 시비20%
- 사업위치: 사하구 보건소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(건강검진) 및 동 시행령 제 24조
의료급여법 제 14조(건강검진)
- 추진경위: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
- 추진계획: 건강검진 홍보물 활용을 통한 사업홍보 및 안내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,250	1,250	0	0.00%
예산총계	1,250			
기금보조금	1,000			
광역보조금	25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,250	1,250	0	0.0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201 일반운영비	1,250	1,250	0	0.00%
01 사무관리비	1,250	1,250	0	0.00%

구강보건실 운영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구강보건실의 원활한 운영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9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0,000 천원
- 사업규모: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(영유아, 미취학, 초등학교, 임신부, 경로당, 장애인시설 등)
- 사업내용: 구강상담 및 구강보건교육, 예방처치 등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구비 100%
- 사업위치: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구강보건법, 지역보건법
- 추진경위: -
- 추진계획: 기간: 2024.01 ~ 2024.12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,250	1,250	0	0.00%
예산총계	1,250			
자체재원	1,25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,250	1,250	0	0.00%
201 일반운영비	1,250	1,250	0	0.00%
01 사무관리비	1,250	1,250	0	0.00%

아동(학생) 치과주치의사업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아우식 유병률을 낮추고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함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9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100,000 천원
- 사업규모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초등학교 5학년 학생
- 사업내용 : - 구강검진 : 문진, 치면세균막(PHP) 검사, 방사선사진 촬영
- 구강보건교육 : 구강위생관리, 바른식습관, 불소이용, 금연/절주, 칫솔질/치실질
- 예방처치 : 전문가 구강위생관리, 불소도포, 치아홈메우기, 치석제거
- 구강질환 치료(저소득층 아동) : 충전, 신경치료, 발치 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 50%, 구비 50%
- 사업위치 : 관내 치과의원 연계 시술비 지원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 제7조, 학교보건법 제7조,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
- 추진경위 : 충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구강건강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이 구강건강증진대상이 됨으로써 사업량 증가
- 추진계획 : -2024. 3~4 사업 참여 수요조사(학교·지역아동센터) 공문 발송, 치과의원 선정
-2024. 5~12 협력 치과의원 구강검진, 예방진료 등 의뢰 및 청구 진료비 지급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0,280	18,400	1,880	10.22%
예산총계	20,280			
광역보조금	10,140			
자체재원	10,14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0,280	18,400	1,880	10.22%
307 민간이전	20,280	18,400	1,880	10.22%
01 의료 및 회복비	20,280	18,400	1,880	10.22%

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저소득층 노인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 구강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4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
- 사업내용: 구강검진, 구강보건교육, 예방진료(스케일링, 불소도포 등),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시비 50%, 구비 50%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구강보건법,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 조례, 제7기 민선공약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,474	5,935	△461	△7.77%
예산총계	5,474			
광역보조금	2,737			
자체재원	2,737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,474	5,935	△461	△7.77%
201 일반운영비	2,474	2,335	139	5.95%
01 사무관리비	2,474	2,335	139	5.95%
301 일반보전금	3,000	3,600	△600	△16.67%
14 기타보상금	3,000	3,600	△600	△16.67%

노인 의치보철사업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치(틀니)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도록 함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30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50세 이상 장애인
- 사업내용 : 완전의치(틀니) ·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용 등 지원
- 지원형태 : 자치단체보조
- 지원조건 : 시비 50%, 구비 50%
- 사업위치 : 관내 치과의원 연계 시술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구강보건법 제3조, 제6조, 제7조
- 추진경위 :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며,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저하된 장애인의 구강 내 문제는 비장애인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막중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
- 추진계획 : -2024. 3~4 노인·장애인 의치(틀니) 보철사업 협력 치과의원 및 사업 대상자 선정
-2024. 5~12 지정 치과의원에서 의치 제작 및 청구 시술비 지급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0,000	60,000	0	0.00%
예산총계	60,000			
광역보조금	30,000			
자체재원	30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0,000	60,000	0	0.00%
307 민간이전	60,000	60,00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60,000	60,000	0	0.00%

물리치료실 운영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층 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: 통증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
1. 지원대상: 보건소 내소자 중 물리치료를 원하는 분(제한 없음)
2. 지원내용: 전기 장비를 통한 통증 치료 및 재활 운동 교육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구비 100%
- 사업위치: 사하구 보건소 물리치료실
- 시행주체: 사하구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,700	3,700	0	0.00%
예산총계	3,700			
자체재원	3,7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,700	3,700	0	0.00%
201 일반운영비	2,200	2,200	0	0.00%
01 사무관리비	1,200	1,200	0	0.00%
02 공공운영비	1,000	1,000	0	0.00%
307 민간이전	1,500	1,50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1,500	1,500	0	0.00%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장기간 치료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희귀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4,10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
- 사업내용 :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
 1. 지원대상 : 1,147개의 희귀 질환자 중 소득,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
 2. 지원항목 :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10%, 간병비, 보조기기 구입비 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기금 50%, 시비 50%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○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57,000	800,000	△243,000	△30.38%
예산 총 계	557,000			
기금보조금	278,500			
광역보조금	278,5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57,000	800,000	△243,000	△30.38%
307 민간이전	557,000	800,000	△243,000	△30.38%
05 민간위탁금	557,000	800,000	△243,000	△30.38%

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지원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함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11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사하구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(1세대) 36명
- 사업내용 : 1.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
-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)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
- 원자폭탄 피해자 확인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2.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 100%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, 제14조
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3조, 제5조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4,000	22,800	1,200	5.26%
예산총계	24,000			
광역보조금	24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4,000	22,800	1,200	5.26%
301 일반보조금	24,000	22,800	1,200	5.26%
02 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, 지방재원)	24,000	22,800	1,200	5.26%

치매안심센터 운영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제시 및 차질없는 이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,33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치매안심센터 3개소 운영
운영인력: 27명 내외
- 사업내용: - 치매조기검진, 진단검진, 감별검사 등 검진사업 실시
- 치매 어르신 전담 코디네이터를 1: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
-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, 교육·상담, 송영서비스 등
-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카페 운영 등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(기금) 80%, 시비 10%, 구비 10%
- 사업위치: 사하구 치매안심센터(괴정 실버힐링센터 치매안심센터 본소, 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분소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치매관리법 및 치매정책사업안내(보건복지부)
- 추진경위: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
- 추진계획: 1~2월: 사업 계획 수립
연중: 검진, 치료비 지원, 쉼터 운영, 사례관리, 복지연계 등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증상 악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
12월: 평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○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28,736	487,830	△159,094	△32.61%
예산총계	328,736			
기금보조금	262,988			
광역보조금	32,874			
자체자원	32,874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28,736	487,830	△159,094	△32.61%
101 인건비	19,990	34,200	△14,210	△41.55%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19,990	34,200	△14,210	△41.55%
201 일반운영비	88,356	216,770	△128,414	△59.24%
01 사무관리비	72,356	144,526	△72,170	△49.94%
02 공공운영비	15,000	70,244	△55,244	△78.65%
03 행사운영비	1,000	2,000	△1,000	△50.00%
202 여비	3,000	3,000	0	0.00%
01 국내여비	3,000	3,000	0	0.00%
203 업무추진비	3,000	3,000	0	0.00%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3,000	3,000	0	0.00%
301 일반보전금	99,390	95,860	3,530	3.68%
14 기타보상금	99,390	95,860	3,530	3.68%
307 민간이전	115,000	135,000	△20,000	△14.81%
01 의료 및 회복비	115,000	135,000	△20,000	△14.81%

치매치료관리비지원(전환사업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한 의료 형평성 제고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,23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2023년 사업비 244,104천원, 매월 670~710명 치매관리비 지원
- 사업내용: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자 치매약제비등 본인 부담금 지원
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을 지원함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자의 치매약제비 지원
재원: 시비 100%
- 사업위치: 사하구치매안심센터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치매관리법 제12조,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
- 추진경위: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
- 추진계획: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
치매치료관리비지원 접수 선정 및 대상자 관리
예산 집행 점검 및 조정
치매관리비 예약금 지급 관리업무 등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46,688	246,688	0	0.00%
예산총계	246,688			
광역보조금	246,688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246,688	246,688	0	0.00%
307 민간이전	246,688	246,688	0	0.00%
05 민간위탁금	246,688	246,688	0	0.00%

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로서의 존엄성 보장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7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-피후견인 5명, 공공후견인 4명(2021.10월 기준)
- 사업내용 : -후견심판 청구
-공공후견인 교육
-공공후견인 활동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(기금) 80%, 시비 10%, 구비 10%
- 사업위치 : 사하구치매안심센터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-민법 제12조(한정후견개시의 심판), 제14조의2(특정후견의 심판)
-치매관리법 제12조의3
- 추진경위 :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
- 추진계획 : 공공후견인 및 피 후견자 발굴 확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1,500	2,700	8,800	325.93%
예 산 총 계	11,500			
기금보조금	9,200			
광역보조금	1,150			
자체자원	1,15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1,500	2,700	8,800	325.93%
201 일반운영비	300	300	0	0.00%
01 사무관리비	300	300	0	0.00%
301 일반보전금	11,200	2,400	8,800	366.67%
14 기타보상금	11,200	2,400	8,800	366.67%

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한방치매사업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4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한방치매 대상자 22명
- 사업내용 :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 대상 6개월간 한약, 약침, 침치료를 무료로 지원
- 지원형태 : 민간보조
- 지원조건 : 사하구 관내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(시비 100%)
- 사업위치 : 관내 한방치매예방 지정한의원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건강정책과-1573 (2019.1.23.)
- 추진경위 : -시 사업 추진
- 추진계획 : 대상자 모집 후 지정한의원 인지검사 실시
한의원 배정(대상자 의사 고려)
한방치매사업(6개월 한약 투약, 주2회 이상 침 치료, 주1회 약침)
결과 평가(치료 종결 후 인지검사, 통계 분석, 보고서 제출)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,500	8,500	0	0.00%
예산총계	8,500			
광역보조금	8,5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,500	8,500	0	0.0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7 민간이전	8,500	8,500	0	0.00%
05 민간위탁금	8,500	8,500	0	0.00%

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 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 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보건소를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함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18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내용 :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
 1. 지원대상 : 관내 장애인, 예비 장애인, 주민
 2. 사업내용
 - 관내 장애인 발굴, 등록, 관리
 - 재활 프로그램 운영
 -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 : 보건소 관할 구
- 시행주체 :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추진근거 :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18조
- 추진계획 : 1월~12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4,930	33,990	940	2.77%
예산총계	34,930			
국고보조금	17,465			
광역보조금	8,732			
자체재원	8,733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4,930	33,990	940	2.77%
101 인건비	34,930	33,990	940	2.77%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34,930	33,990	940	2.77%

건강서비스 증진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보건서비스 향상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5,000 천원
- 사업규모: 총 2,310천원
- 사업내용: 사회복지무요원 종식비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구비 100%
- 사업위치: 사하구 까치고개로 50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3항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3,535	2,310	11,225	485.93%
예산총계	13,535			
자체재원	13,535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3,535	2,310	11,225	485.93%
301 일반보전금	13,535	2,310	11,225	485.93%
10 사회복지무요원보상금	13,535	2,310	11,225	485.93%

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(신규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보건 보건의료

정책사업: 구민건강증진

단위사업: 건강보건서비스향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가임력 보존 목적 냉동난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 지원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구비 등
- 사업내용: 가임력 보존 목적 냉동난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구비 등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(23.7.27.)_임산·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·다둥이 가정의 임산·출산·양육부담 획기적 개선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,000	0	4,000	100.00%
예산총계	4,000			
기금보조금	2,000			
광역보조금	1,000			
자체재원	1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,000	0	4,000	100.00%
307 민간이전	4,000		4,000	10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4,000	0	4,000	100.00%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(정신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,75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자매정신요양원 입소자 정원: 270명
- 사업내용: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 90%, 시비 10%
- 사업위치: 관내 정신요양시설 (과정 3동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
- 추진계획: 2024.1.1-2024.12.31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○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50,000	517,444	32,556	6.29%
예산총계	550,000			
국고보조금	495,000			
광역보조금	55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50,000	517,444	32,556	6.29%
301 일반보조금	550,000	517,444	32,556	6.29%
01 사회보장적수혜금(국고보조자원)	550,000	517,444	32,556	6.29%

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기여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5,31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자매정신요양원 입소자 정원: 270명, 종사자: 45명
- 사업내용: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(입소자 관리운영비, 종사자 인건비 등) 지원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국비 70%, 시비 30 %
- 사업위치: 관내 정신요양시설(괴정 3동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○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,062,000	2,406,684	655,316	27.23%
예산총계	3,062,000			
국고보조금	2,143,000			
광역보조금	919,0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3,062,000	2,406,684	655,316	27.23%
307 민간이전	3,062,000	2,406,684	655,316	27.23%
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3,062,000	2,406,684	655,316	27.23%

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(순시비)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환경 개선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60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▷복지수당 : 자매정신요양원 종사자 1인 월 10만원
▷복지포인트 : 자매정신요양원 종사자 1인 년 10만원
- 사업내용 :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시비 100%
- 사업위치 : 관내 정신요양시설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등
- 추진계획 : 2023.1.1. - 2028.12.31.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19,996	108,040	11,956	11.07%
예산총계	119,996			
광역보조금	119,996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19,996	108,040	11,956	11.07%
307 민간이전	119,996	108,040	11,956	11.07%
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119,996	108,040	11,956	11.07%
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질환 예방·조기개입, 치료 및 재활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6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51,100천원
- 사업내용: 1.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2.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
-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
- 지역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
-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
- 자살예방사업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41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추진계획: 사업계획 및 평가, 사업비 교부, 수행기관 지도점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1,100	51,100	0	0.00%
예산총계	51,100			
기금보조금	25,550			
광역보조금	12,775			
자체재원	12,775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51,100	51,100	0	0.00%
307 민간이전	51,100	51,100	0	0.00%
05 민간위탁금	51,100	51,100	0	0.00%
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4,59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917,280천원
- 사업내용: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41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추진계획: 사업비 교부, 수행기관 지도점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○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76,108	776,108	0	0.00%
예산 총계	776,108			
기금보조금	388,054			
광역보조금	194,027			
자체재원	194,027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76,108	776,108	0	0.00%
307 민간이전	776,108	776,108	0	0.0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5 민간위탁금	776,108	776,108	0	0.00%
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 후생 증진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23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총 46,687천원
- 사업내용 :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
- 지원형태 : 민간보조
- 지원조건 : 시비 100%
- 사업위치 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41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추진계획 : 사업비 교부, 수행기관 지도점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6,687	36,000	10,687	29.69%
예산총계	46,687			
광역보조금	46,687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6,687	36,000	10,687	29.69%
307 민간이전	46,687	36,000	10,687	29.69%
05 민간위탁금	46,687	36,000	10,687	29.69%
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지원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52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106,466천원
- 사업내용: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지원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 41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추진계획: 사업비 교부, 수행기관 지도점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5,828	106,466	△638	△0.60%
예산총계	105,828			
기금보조금	52,914			
광역보조금	26,457			
자체재원	26,457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05,828	106,466	△638	△0.60%
307 민간이전	105,828	106,466	△638	△0.6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5 민간위탁금	105,828	106,466	△638	△0.60%

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21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40,720천원
- 사업내용: 1.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 조성(생명지킴이 양성교육, 일산화탄소 자살예방사업,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, 통합사례회의, 찾아가는 이동상담)
2.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(자살고위험군 사후관리사업,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, 자살다발지역 집중관리)
3. 자살예방 정책 추진기반 강화(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사업)
4.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지원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41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2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
- 추진계획: 사업계획 및 평가, 사업비 교부, 수행기관 지도점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1,060	40,720	340	0.83%
예산총계	41,060			
기금보조금	20,530			
광역보조금	10,265			
자체재원	10,265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41,060	40,720	340	0.83%
307 민간이전	41,060	40,720	340	0.83%
05 민간위탁금	41,060	40,720	340	0.83%

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(시비지원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5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9,292천원
- 사업내용: 1.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 조성(생명지킴이 양성교육, 일산화탄소 자살예방사업,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, 통합사례회의, 찾아가는 이동상담)
2.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(자살고위험군 사후관리사업,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, 자살다발지역 집중관리)
3. 자살예방 정책 추진기반 강화(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사업)
4.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지원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시비 50%, 구비 50%
- 사업위치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41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2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
- 추진계획: 사업계획 및 평가, 사업비 교부, 수행기관 지도점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9,292	9,292	0	0.00%
예산총계	9,292			
광역보조금	4,646			
자체자원	4,646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9,292	9,292	0	0.00%
307 민간이전	9,292	9,292	0	0.00%
05 민간위탁금	9,292	9,292	0	0.00%

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지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7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13,300천원
- 사업내용: 1.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
2. 정신건강교육(생명존중교육, 정신건강예방교육, 마음건강돌보기교육 등)
3.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
4. 정신건강 홍보 및 캠페인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기금 50%, 시비 50%
- 사업위치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 41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추진계획: 사업계획 및 평가, 사업비 교부, 수행기관 지도점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3,300	13,300	0	0.00%
예산총계	13,300			
기금보조금	6,650			
광역보조금	6,65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3,300	13,300	0	0.00%
307 민간이전	13,300	13,300	0	0.00%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05 민간위탁금	13,300	13,300	0	0.00%

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

회계연도 : 2024년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 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
- 사업기간 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 : 4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 : 총 7,650천원
- 사업내용 :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(사회복귀훈련 등) 운영
- 지원형태 : 민간보조
- 지원조건 : 시비 50%, 구비 50%
- 사업위치 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41)
- 시행주체 : 사하구
- 추진근거 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추진계획 : 사업계획 및 평가, 사업비 교부, 수행기관 지도점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,650	7,650	0	0.00%
예산 총계	7,650			
광역보조금	3,825			
자체재원	3,825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7,650	7,650	0	0.00%
307 민간이전	7,650	7,650	0	0.00%
05 민간위탁금	7,650	7,650	0	0.00%

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(정신건강복지센터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질환 예방·조기개입, 치료 및 재활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57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113,000천원
- 사업내용: 1.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(등록 및 사례관리, 재활프로그램 운영)
2. 지역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(현장대응, 연합사례회의)
3.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(정신건강검진 및 교육, 홍보 및 캠페인, 찾아가는 심리지원, 집단프로그램, 재난 심리지원)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기금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(사하구 장림번영로41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추진계획: 사업계획 및 평가, 사업비 교부, 수행기관 지도점검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13,000	114,250	△1,250	△1.09%
예산총계	113,000			
기금보조금	56,500			
광역보조금	28,250			
자체자원	28,25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13,000	114,250	△1,250	△1.09%
307 민간이전	113,000	114,250	△1,250	△1.09%
05 민간위탁금	113,000	114,250	△1,250	△1.09%

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(정신요양·재활시설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통합 복지 제공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9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18,960천원
- 사업내용: 정신질환 당사자들을 위한 문화, 예술, 여가 활동 서비스 제공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기금 50%, 시비 50%
- 사업위치: 사하구 자매정신요양원 및 재활시설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
- 추진계획: 2023.1.1-2023.12.31.
예산편성 기관 지도 및 감독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6,920	3,200	13,720	428.75%
예산총계	16,920			
기금보조금	8,460			
광역보조금	8,46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6,920	3,200	13,720	428.75%
307 민간이전	16,920	3,200	13,720	428.75%
05 민간위탁금	16,920	3,200	13,720	428.75%

정신건강심의(심사)위원회 운영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건강 관련 사항 심의 및 심사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4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8,400천원
- 사업내용: 정신건강심의(심사)위원회 운영 및 참석위원 수당 지급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구비 100%
- 사업위치: 사하구 보건소(사하구 하신중앙로185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호 및 제54조
- 추진계획: 월 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, 참석위원 수당 지급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,400	8,400	0	0.00%
예산 총계	8,400			
자체재원	8,400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8,400	8,400	0	0.00%
201 일반운영비	8,400	8,400	0	0.00%
01 사무관리비	8,400	8,400	0	0.00%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10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총 19,460천원
- 사업내용: 1.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
2.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
3.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4.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
5.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
- 지원형태: 직접수행
- 지원조건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사업위치: 사하구 보건소(사하구 하신중앙로185)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, 제79조, 제80조 등
- 추진계획: 사업 계획 수립, 신청서류 접수 및 치료비 지원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9,460	19,460	0	0.00%
예산총계	19,460			
국고보조금	9,730			
광역보조금	4,865			
자체재원	4,865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9,460	19,460	0	0.00%
307 민간이전	19,460	19,460	0	0.00%
01 의료 및 회복비	19,460	19,460	0	0.00%

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(공동생활가정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,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320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공동생활가정
- 사업내용: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시비 100%
- 사업위치: 사하구 사리로 37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
- 추진경위: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 후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
- 추진계획: 보건복지부 지침(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)에 따라 지원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4,087	29,626	34,461	116.32%
예산총계	64,087			
광역보조금	64,087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64,087	29,626	34,461	116.32%
307 민간이전	64,087	29,626	34,461	116.32%
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64,087	29,626	34,461	116.32%

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(주간재활시설)

회계연도: 2024년

회 계: 일반회계

조 직: 보건소 건강증진과

기 능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: 정신건강복지 증진

단위사업: 정신건강증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,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- 사업기간: 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- 총사업비: 925,000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- 사업규모: 주간재활시설 1개소
- 사업내용: 정신재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
- 지원형태: 민간보조
- 지원조건: 시비 100%
- 사업위치: 사하구 사리로 37
- 시행주체: 사하구
- 추진근거: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
- 추진경위: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 후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
- 추진계획: 보건복지부 지침(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)에 따라 지원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	정수물품 배정승인	지방채발행대상	도시계획확인
X	X	X	X	X	X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85,778	55,670	130,108	233.71%
예산총계	185,778			
광역보조금	185,778			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당해연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185,778	55,670	130,108	233.71%
307 민간이전	185,778	55,670	130,108	233.71%
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185,778	55,670	130,108	233.71%